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4호
- 나. 제 안 자 : 김호평 의원(찬성자 16명)
- 다. 제출일자 : 2018년 12월 31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월 7일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나. 협약체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 상 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제8호)에 대한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조례안의 추진배경

-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외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가입금의 부과·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청원의 수리·처리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등으로 정하고 있음(제39조제1항).
- 제정안은 이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행정기관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음.

- 지금껏 서울시는 대내·외 투자유치와 시정발전을 이유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합의·양해각서 등의 형태로 서울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체결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했음.

- 2017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시의회의 사전의결 없이 체결한 양해각서(MOU)¹⁾는 총 420건이며, 이 중 상호 노력 의무만 약정하는 양해각서 외에도, 협약 체결 이후 예산이 수반되면서 시 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다수 있었음.²⁾

- 제정안은 이처럼 협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후 세출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사항이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형식, 절차 등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임.

- 이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1)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 단체와 단체 사이에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하여 정한 협정이나 협약. 또는 그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의미하며,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로 “업무 협정”, “업무 협약”, “양해 각서”가 있음(국립국어원)

2) 예산이 수반된 서울시의 대표적 협약 사례를 보면, 2017년 1월에 체결된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을 위한 대한성공회와의 협약식은 토지보상비 예산 45억 원이 반영된 바 있으며, 2018년 7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도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기부, 간편결제사업자, 은행 등과 맺은 협약은 2018년도 추경으로 30억원과 2019년도 38억 6,7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서울시 MOU 체결현황 2018년 기준).

것으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사전적·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³⁾, 각종 협약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협약 상대방 측 입장에서는 영업이나 투자관련 정보의 기밀성과 보안성 저하로 인하여 각종 협약체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시도 운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재 전국 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관련 현황>

조례명	자치단체 현황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30개(기초 30)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31개(광역 8, 기초 23)

3)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면서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추22 판결 참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등”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협약등”은 지방자치“단체”인 수월시가 다른 국내외의 기관·단체 등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협약등을 체결하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집행권한으로 보기는 어렵고(법제처 2016. 6. 17. 의견제시 16-0149 참조), 특히, 협약등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추진 등 수월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경우에 그 협약 등은 의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단순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수월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법제처 의견17-0301).

라.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3호는 “의무부담”을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권리의 포기”를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대해 하위 법령에 해석규정을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하위법령에 정의규정을 둘 때에는 그로 인해 의미상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8호로 규정된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축소되어 해석되거나 법규와의 상충가능성이 있음.⁴⁾

4)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 및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 등의 문구는

- 따라서 의미가 모호하고 해석상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여 정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용어를 보다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

2) 조례안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와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로 규정하고 있음.
- 반면,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이나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등은 적용하지 않도록 배제하고 있음.
-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2항 중 “순수한”이라는 용어는 양해각서의 대상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그 의미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는 것과 달리 “법적 의무를 부담”,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법 규정과의 상충 가능성이 있고, 같은 호에서 “예산 외”의 사항을 의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재정적”인 의무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러한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의무부담”과 “권리의 포기”를 정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같은 용어의 의미보다 확대되거나 축소되어 해석될 여지가 있고, 그 결과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일치하지 않아 운영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16-0167)).

3) 협약체결(안 제4조)

- 안 제4조는 조례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무(의회의 의결사항)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긴급한 사무일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에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체결시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도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의 입법화에는 문제가 없음.

4) 의안형식, 자료제출, 사후관리 등(안 제5조~제7조)

- 안 제5조는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을 협약체결 전 (동의안)과 체결 후(사후동의안)로 구분하고 있는 바, 이는 안 제4조에서 협약체결 전 의회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후동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
- 안 제6조는 의안 제출 시 ▶구체적인 의무부담과 권리포기

내용 ▶비용추계서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와 첨부서류 등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의안의 심의와 관련된 필수 서류를 의회가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의안 심사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규정이나, 제출서류를 3가지 사항으로만 제한할 경우 충분한 의안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안 제7조는 “협약” 이행 등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5)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사항, 평가결과 등을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토록 함으로써 협약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됨.

마. 종합의견

5)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이 의회 의결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의결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취지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경우 서울시의 주요 정책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시가 체결하는 협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 다만, 안 제2조 중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와 같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정의할 경우 법령과의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용어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 제6조의 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추가하고, 일부 인용조문 오류와 오기에 따른 용어 등의 수정이 필요함.

담당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2180-8056

<참고자료 1> 관련 법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2> 타 시·도 사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도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 달성을 위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상주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고유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7조에 따라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의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의한 예산 외의 사무
-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는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이 조례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협약체결 전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다.

제6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5조제1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
2. 상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8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이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상주시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민자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4.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해당 사무의 처리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된 사무는 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주시 시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공유재산업무담당 부서장 등 의안과 관련된 업무담당부서장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